

○ ○ 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

아래 사건에 관한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검사 (검사명)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.

사 건 번 호		
피의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	주 거	
죄 명		
검사가 요구한 조치		
수사관 의견		

○ ○ 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